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2023.12. 8.)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목 차

[보건소 소관]

◆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I	제안 개요	1
II	2024년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1
III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 현황	6
	① 세입·세출 총괄 현황	
	② 일반회계 세입현황	
	③ 일반회계 세출현황	
	④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⑥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현황	
IV	2024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8
V	검토결과(검토의견)	19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23-178
번호	23-179

I. 제안 개요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보건소)
- 나. 제 출 일 : 2023. 11. 17.
- 다. 회 부 일 : 2023. 11. 20.

2.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II. 2024년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마포구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08% 증가된 총 8,412억 원이며, 재정자립도¹⁾는 27.98%로 전년대비 △4.96% 감소했으며, 재정자주도²⁾는 44.69%로 전년대비 △5.34% 낮아졌음.
 - 일반회계는 7,995억 원으로 전년대비 8.29% 증가함.
 - 특별회계는 417억 원으로 전년대비 4.28% 증가함.
- 기금운용계획안은 832억 원으로 전년대비 △238억원이 감소함.

1) 재정자립도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총규모

2) 재정자주도 = 자체재원 + 보조금 제외한 의존재원(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일반회계 총규모

가. 2024년도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2024 예산액	2023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41,290,948	778,400,207	62,890,741	8.08%
일반회계	799,551,491	738,373,943	61,177,548	8.29%
특별회계	41,739,457	40,026,264	1,713,193	4.28%
의료급여기금	580,000	584,000	△4,000	0.68%
마포농수산물시장	6,323,221	5,897,798	425,423	7.21%
주차장	28,508,249	31,488,866	△2,980,617	△9.4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579,977	301,600	5,278,377	1750.13%
건축안전	748,010	1,754,000	△1,005,990	△57.35%

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구 분	2023년도말 조성액 ①=a+b-c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②	증 감 ③=①-②
		수입④	지출⑤		
합 계	107,152,354	16,165,815	40,026,594	83,291,575	△23,860,779
1 남북교류협력기금	615,307	123,881	154,000	585,188	△30,119
2 고향사랑기금	0	49,433	4,900	44,533	44,533
3 재난관리기금	5,756,686	0	0	5,756,686	0
4 자활기금	1,644,590	74,000	69,313	1,649,277	4,687
5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601,424	166,736	157,115	611,045	9,621
6 양성평등기금	2,157,678	57,000	57,000	2,157,678	0
7 중소기업육성기금	3,530,668	3,669,901	5,000,560	2,200,009	△1,330,659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420,314	2,229,295	22,828,707	24,820,902	△20,599,412
9 공유재산관리기금	29,401,620	1,715,300	5,283,440	25,833,480	△3,568,140
1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921,362	45,390	60,420	906,332	△15,030
11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059,684	189,060	165,978	1,082,766	23,082
12 마포자원화수시설 관련기금	8,671,401	3,704,161	2,458,209	9,917,353	1,245,952
13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817,813	251,870	145,740	923,943	106,130
14 옥외광고발전기금	1,120,369	370,000	294,800	1,195,569	75,200
15 도로굴착복구기금	2,798,309	1,385,252	1,803,540	2,380,021	△418,288
16 식품진흥기금	2,635,129	142,330	620,595	2,156,864	△478,265

2. 세입·세출예산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99,551,491	738,373,943	61,177,548	8.29%
지방세수입	162,122,106	184,743,461	△22,621,355	△12.24%
세외수입	61,596,165	58,704,505	2,891,660	4.93%
지방교부세	14,678,000	18,366,000	△3,688,000	△20.08%
조정교부금등	118,893,310	107,783,312	11,109,998	10.31%
보조금	354,548,450	322,574,005	31,974,445	9.9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7,713,460	46,202,660	41,510,800	89.85%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41,739,457	40,026,264	1,713,193	4.28%
세외수입	22,969,795	22,954,096	15,699	0.07%
경상적세외수입	15,629,264	16,469,811	△840,547	△5.10%
임시적세외수입	2,791,131	2,821,885	△30,754	△1.0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549,400	3,662,400	887,000	24.22%
보조금	580,000	885,600	△305,600	△34.51%
국고보조금등	290,000	593,600	△303,600	△51.15%
시·도비보조금등	290,000	292,000	△2,000	△0.6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189,662	16,186,568	2,003,094	12.38%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95억5,149만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383억7,394만3천원 보다 8.29%, 611억7,754만8천원 증액 편성됨.
- 지방세 수입은 작년 대비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과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및 경기 불확실 등으로 전년대비 12.24% 감소된 1,621억2,210만6천원이고,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의 사

용료수입 증가 및 고금리 영향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93% 소폭 증가된 615억9,616만5천원임.

-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표준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전년대비 △20.08% 감소된 146억7,800만원임.
- 아울러, 보조금은 국·시비 매칭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9.91%증가된 3,545억4,845만원임.
-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은 ‘23년도 예산보다 △4.28%, △17억1,319만3천원 감액된 417억3,345만7천원을 편성 요청함.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07% 증가된 229억6,979만5천원이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잉여금 감소와 발전소지원사업의 잉여금 및 예탁금 및 예수금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2.38% 증가된 20억309만4천원임.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99,551,491	100.00%	738,373,943	100.00%	61,177,548	8.29%
인건비	128,911,566	16.12%	121,937,912	16.51%	6,973,654	5.72%
물건비	49,604,190	6.20%	45,888,659	6.21%	3,715,531	8.10%
경상이전	555,412,981	69.47%	506,447,057	68.59%	48,965,924	9.67%
자본지출	53,095,449	6.64%	39,297,244	5.32%	13,798,205	35.11%
내부거래	3,307,119	0.41%	3,823,966	0.52%	△516,847	△13.52%
예비비및기타	9,220,186	1.15%	20,979,105	2.84%	△11,758,919	△56.05%

라.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1,739,457	100.00%	40,026,264	100.00%	1,713,193	4.28%
인건비	3,173,662	7.60%	3,200,354	8.00%	△26,692	△0.83%
물건비	1,955,966	4.69%	1,919,051	4.79%	36,915	1.92%
경상이전	16,623,683	39.83%	16,550,725	41.35%	72,958	0.44%
자본지출	10,819,348	25.92%	6,167,554	15.41%	4,651,794	75.42%
융자및출자	500	0.00%	500	0.00%	0	0.00%
내부거래	485,540	1.16%	0	0.00%	485,540	순증
예비비및기타	8,680,758	20.80%	12,188,080	30.45%	△3,507,322	△28.78%

-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7,995억5,149만1천 원으로
 - 일반회계는 ‘23년도 예산안 대비 8.29%, 611억7,754만8천 원 증액된 7,995억5,149만1천 원이고
 - 특별회계는 ‘23년도 예산안 대비 4.28%, 17억1,319만3천 원 증액된 417억3,945만7천 원을 편성함.
-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의 경직성 예산이 소폭 증가함과 민선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공약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소폭 상승하였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국고보조재원이 포함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확대 편성되었으며, 민간분야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산 등 복지 정책 예산이 증대되었음.

Ⅲ. 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 현황

1. 세입·세출 총괄현황

가. 세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6,679,961	16,157,355	522,606	3.23%
일반회계	16,679,961	16,157,355	522,606	3.23%
특별회계	-	-	-	-

-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166억7,996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1억5,735만5천원 대비 3.23%, 5억2,260만6천원 증가된 규모로서 마포구 전체 세입 예산의 1.98%에 해당함.

나. 세출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7,641,085	26,893,139	747,946	2.78%
일반회계	27,641,085	26,893,139	747,946	2.78%
특별회계	0	14,704	△14,704	△100.0%

- 세출예산은 276억4,108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8억9,313만9천원 대비 7억4,794만6천원, 2.78% 증가하여 마포구 전체 세출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현황

가.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6,679,961	16,157,355	522,606	3.23%
세외수입	362,316	394,557	△32,241	△8.17%
경상적세외수입	270,756	295,597	△24,841	△8.40%
재산임대수입	1,189	0	1,189	순증
사용료수입	101,319	155,742	△54,423	△34.94%
수수료수입	168,248	139,855	28,393	20.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1,560	98,960	△7,400	△7.48%
과징금	23,820	27,140	△3,320	△12.23%
과태료	67,740	71,820	△4,080	△5.68%
보조금	16,317,645	15,762,798	554,847	3.52%
국고보조금등	5,972,357	6,520,153	△547,796	△8.40%
국고보조금등	5,972,357	6,520,153	△547,796	△8.40%
시·도비보조금등	10,345,288	9,242,645	1,102,643	11.93%
시·도비보조금등	10,345,288	9,242,645	1,102,643	11.93%

-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수수료, 사용료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로 구분되며, 전년대비 △8.17% ,△3,224만1천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의약과의 아현문화건강센터 관리비 수입 감소와 위생과의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이 감소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
- 보조금은 163억1,764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3.52%, 5억5,484만7천원 증가하였음. 이는 서울시 보조사업인 모자보건사업, 난임지원사업,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가내시액 증가에 따른 것임.

나.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총계	16,679,961	16,157,355	522,606
보건행정과	2,114,732	2,391,945	△277,213
위생과	489,350	441,000	48,350
건강동행과	13,627,136	12,701,506	925,630
의약과	448,743	622,904	△174,161

-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수수료와 국·시비보조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2억7,721만3천원 감액된 21억1,473만2천원임.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등의 ‘암조기검진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가내시액 감소분이 반영된 것임.
- 위생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의 가내시액 증가로 전년대비 4,835만원 증액된 4억8,935만원임.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가내시액의 증액편성으로 인한 것임.
- 건강동행과는 국고보조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사업’, ‘난임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의 시·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9억2,563만원이 증가한 136억2,713만6천원이 편성됨.
- 의약과는 전년대비 △1억7,416만1천원 감소한 4억4,874만3천원을 편성함. 이는 기타사용료인 관리비 수입(아현문화건강센터) △5,442만3천원과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00만원, 보조금 △1억1,923만8천원 감액 편성한 것임.

3. 일반회계 세출현황

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27,641,085	100.00%	26,907,843	100.00%	733,242	2.73%
인건비	4,048,457	14.65%	4,322,146	16.06%	△273,689	△6.33%
물건비	1,582,523	5.73%	1,616,152	6.01%	△33,629	△2.08%
일반운영비	1,199,163	4.34%	1,283,352	4.77%	△84,189	△6.56%
여비	216,360	0.78%	209,820	0.78%	6,540	3.12%
업무추진비	70,640	0.26%	69,580	0.26%	1,060	1.52%
재료비	96,360	0.35%	53,400	0.20%	42,960	80.45%
경상이전	21,781,385	78.80%	20,261,540	75.30%	1,519,845	7.50%
일반보전금	1,867,100	6.75%	699,680	2.60%	1,167,420	166.85%
포상금	24,472	0.09%	5,600	0.02%	18,872	337.00%
연금부담금등	372,589	1.35%	362,707	1.35%	9,882	2.72%
배상금등	1,000	0.00%	1,000	0.00%	0	0.00%
민간이전	16,611,271	60.10%	16,182,536	60.14%	428,735	2.65%
자치단체등이전	2,405,612	8.70%	2,538,487	9.43%	△132,875	△5.23%
전출금	499,341	1.81%	471,530	1.75%	27,811	5.90%
자본지출	228,720	0.83%	708,005	2.63%	△479,285	△67.70%
시설비및부대비	55,000	0.20%	192,165	0.71%	△137,165	△71.38%
자산취득비	173,720	0.63%	515,840	1.92%	△342,120	△66.32%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6억4,108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3,324만 2천원, 2.73%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내역은 경상이전의 일반보전금이 전년대비 166.85%, 11억 6,74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이 전년대비 2.65%, 4억2,873만5천원 증액 편성함. 반면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감소로 전년대비 △6.33%, △2억7,368만9천원 감액되었음. 또한 자본지출의 시설비(△1억3,716만5천원)와 자산및물품취득비(△3억4,212만원)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67.70%, △4억7,928만5천원 감액되었음.

나.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7,641,085	100.00 %	26,907,843	100.00 %	733,242	2.73 %
보건행정과	3,609,176	13.06 %	4,009,098	14.90 %	△399,922	△9.98 %
위생과	853,759	3.09 %	809,566	3.01 %	44,193	5.46 %
건강동행과	20,979,771	75.90 %	19,322,864	71.81 %	1,656,907	8.57 %
의약과	2,198,379	7.95 %	2,766,315	10.28 %	△567,936	△20.53 %

다.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

1) 보건행정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보건행정과	3,609,176	4,009,098	△399,922
보건의료서비스 운영	3,432,007	3,837,912	△405,905
보건소 기능 강화	2,657,617	2,882,582	△224,965
통합민원서비스	161,744	137,908	23,836
건강도시 조성	8,335	8,680	△345
지역사회건강조사	69,932	69,932	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32,000	560,000	△228,000
암조기검진사업	286,220	264,500	21,720
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	254,000	279,000	△25,000
건강증진사업관리	10,000	10,000	0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사업	234,500	234,500	0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37,036	38,176	△1,140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1,000	20,764	236
자살 유족 지원사업	51,080	54,400	△3,320
정신보건사업	867,050	836,962	30,088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53,520	149,760	3,76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0,000	18,000	2,00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51,200	200,000	△48,800
감염병 관리	774,390	940,626	△166,236
방역소독	307,381	311,858	△4,477
에이즈예방관리	234,125	321,325	△87,200
주요감염병표본감시	920	920	0
국가결핵관리사업	173,050	242,279	△69,229
결핵검진사업	8,974	8,290	684
감염병예방관리	29,940	55,954	△26,014
말라리아 퇴치사업(신규)	20,000	0	20,000
행정운영경비	177,169	171,186	5,983
인력운영비(보건소장실)	40,205	36,015	4,190
기본경비	136,964	135,171	1,793

- 보건행정과는 36억917만6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억9,992만2천원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13.06%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행정과 신규 편성 내역은 ‘통합민원서비스’ 의료지원 민간 용역 1,680만원, 관리용역비(보건소 청사 비데 임차 용역) 800만원, 선별검사소 가설물 설치비 5,000만원, ‘감염병 관리’ 신종위생해충 대량발생 등 위탁계약 1,20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역학조사용 노트북 구매 200만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2,000만원임.
- 주요 증편성 내역은 ‘통합민원서비스’ 시설비 및 부대비 선별검사소 가설물 설치비 등으로 4,003만원, ‘암조기검진사업’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암검진비 건강보험공단 예탁 관련으로 2,042만원,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008만8천원, ‘감염병 관리’ 방역소독원 위생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488만원, 방역소독용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546만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2,000만원임.
- 주요 감편성 내역은 ‘통합민원서비스’ 일반운영비 △1,619만4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 예탁금인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2,8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2,500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4,880만원, ‘에이즈예방관리’ 환자 진료비 등 △8,720만원, ‘국가결핵관리사업’ 관리요원 인건비 및 결핵검사 및 입원환자 지원 등 의료 및 회복비 △3,706만5천원, ‘감염병예방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병 예방물품 예산 감소 등으로 △2,601만4천원 등이 감액 편성됨.

2) 위생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위 생 과	853,759	809,566	44,193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32,840	76,117	△43,277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32,840	76,117	△43,277
식품공중위생업신고 · 관리	19,590	19,590	0
위생업소 지도점검	7,010	50,237	△43,227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6,240	6,290	△50
안전한 식품유통문화 정착	701,738	623,538	78,200
식품위생 관리	701,738	623,538	78,200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29,918	29,918	0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626,220	593,620	32,600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신규)	45,600	0	45,600
행정운영경비	119,181	109,911	9,270
기본경비	119,181	109,911	9,270
기본경비	119,181	109,911	9,270

- 위생과는 8억5,375만9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419만3천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3.09%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편성 내역은 전년도와 단위사업이 동일한 가운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통합 운영에 따라 예산 과목을 단일화하였고, 시·구 매칭사업으로 수산물 수거 검사 재료비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명목으로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 4,560만원을 신규 편성되었음.

3) 건강동행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건강동행과	20,979,771	19,322,864	1,656,907
지역주민 건강지키기	14,748,366	13,387,220	1,361,146
모자보건관리	5,607,499	3,027,111	2,580,388
햇빛센터 운영(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84,171	42,357	41,814
모자보건사업 인력운영비	26,534	27,497	△963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6,820	6,702	118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800	2,400	△600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2,212,455	768,570	1,443,885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9,594	38,000	△28,406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93,322	26,940	66,38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0,318	35,000	25,318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4,596	26,000	△1,404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7,715	5,500	2,21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17,600	332,000	△114,4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1,414,667	1,201,940	212,727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1,100	6,170	△5,070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1,316,564	230,932	1,085,632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15,651	18,060	△2,409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67,000	50,500	16,500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	24,100	0	24,100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16,792	16,000	79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4,700	8,348	△3,648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	2,000	2,000	0
예방접종사업	5,801,566	7,318,517	△1,516,951
자체예방접종사업	432,949	133,575	299,374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27,426	27,240	186
국가예방접종 실시	4,462,664	4,806,061	△343,397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운영	30,447	47,235	△16,788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848,080	2,304,406	△1,456,326
생활건강관리	1,221,232	1,253,042	△31,81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13,120	219,420	△6,300
금연구역운영관리	42,980	72,980	△30,000
건강증진사업	75,124	74,571	553
영양플러스사업	251,306	246,524	4,782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배움터	22,000	22,000	0
건강증진사업관리	331,006	331,007	△1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24,450	38,918	△14,468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25,248	219,986	5,262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사업	31,138	22,736	8,402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교육	2,920	2,940	△20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1,940	1,960	△20
방문보건사업	2,118,069	1,788,550	329,519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494,792	1,212,320	282,472
국가치매치료관리비(전환사업)	77,000	103,960	△26,96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4,752	4,656	96
재가암환자관리(전환사업)	12,000	12,000	0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72,502	52,160	20,342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206,967	162,950	44,017
마을건강센터 운영	12,168	12,168	0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237,888	228,336	9,552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출산가정 지원	3,712,360	3,454,360	258,000
건강가정지원사업	3,712,360	3,454,360	258,000
출산장려지원사업	3,712,360	3,454,360	258,000
행정운영경비(건강동행과)	2,519,045	2,481,284	37,761
인력운영비(건강동행과)	2,352,309	2,426,139	△73,830
인력운영비	2,379,361	2,352,309	27,052
인력운영비(서울아기건강첫걸음)	190,534	251,976	△61,442
인력운영비(서울시 방문간호사)	1,102,087	1,041,929	60,158
인력운영비(통합방문간호사)	822,914	802,362	20,552
기본경비(건강동행과)	139,684	128,975	10,709
기본경비	139,684	128,975	10,709

- 건강동행과는 209억7,977만1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6억5,690만7천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75.9%를 차지하고 있음.
- 건강동행과 신규 편성 내역은 ‘햇빛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56만4천원,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2,000천원,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사업안내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및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지원) 등 10억8,563만2천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 2,410만원, ‘자체예방접종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추가에 따라 2억9,937만4천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단속원 과태료 부과 휴대용 단말기 구매 관련 자산취득비 등 220만원, ‘방문보건사업’ 치매안심센터 근로자 정액급식비 276만원 등임.
- 주요 증액 내역은 ‘햇빛센터 운영’ 햇빛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56만4천원, ‘난임부부 지원’ 시술비 지원 14억3,388만5천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6,638만2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531만8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1,272만7천원,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10억8,200만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 모유수유매니저 서비스제공비용 등 2,410만원, ‘자체예방접종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등 2억9,937만4천원 등을 증액 편성함.

- 주요 감액 내역은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2,840만6천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1,440만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3억4,339만7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678만8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4억5,632만6천원, ‘금연구역운영관리’ 사무관리비 △3,000만원,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1,446만8천원, ‘국가치매치료관리비(전환사업)’ △2,696만원, ‘인력운영비(서울아기건강첫걸음)’ △4,97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함.

4) 의약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의약과	2,198,379	2,766,315	△567,936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공동체 실현	1,605,433	2,148,069	△542,636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	1,006,013	1,023,680	△17,667
아현문화건강센터	499,341	471,530	27,811
아현보건지소 운영	123,102	96,192	26,910
건강증진사업관리	87,600	87,600	0
의료기관 관리	7,247	7,247	0
의약품 조제·투약	4,780	4,980	△200
치아건강관리	150,948	141,804	9,144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 운영	63,639	60,708	2,931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40,273	40,273	0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11,520	11,520	0
서강보건지소운영	15,806	19,425	△3,619
어르신건강동행사업	65,396	79,470	△14,074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471,380	793,306	△321,926
건강검진	13,120	18,617	△5,497
검사 및 검진사업	310,170	605,908	△295,738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64,000	60,000	4,000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6,590	11,790	4,800
의약품 안전관리	2,880	2,880	0
재활보건의사업	64,620	94,111	△29,491
응급의료관리	128,040	331,083	△203,043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85,540	57,350	28,190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12,500	10,000	2,500
구민 헌혈 장려 사업	30,000	0	30,000
행정운영경비(의약과)	592,946	618,246	△25,300
인력운영비(의약과)	459,595	498,395	△38,800
인력운영비(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42,540	39,065	3,475
인력운영비(아현보건지소 운영)	175,016	150,711	24,305
인력운영비(서강보건지소 운영)	42,121	38,928	3,193
인력운영비(어르신건강동행사업)	84,604	162,530	△77,926
인력운영비(지역사회중심재활)	40,170	42,177	△2,007
인력운영비(의약품 안전관리)	75,144	64,984	10,160
기본경비(의약과)	133,351	119,851	13,500
기본경비	133,351	119,851	13,500

- 의약과는 21억9,837만9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억6,793만6천원, △20.53%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7.95%를 차지하고 있음.
- 의약과 신규 편성 내역은 ‘의약품 조제·투약’ 조제실 냉방기 구매 200만원, ‘치아건강관리’ 서강보건지소 진료실 확장공사 500만원,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의료기관 대상자 의뢰수당 900만원,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89만원, 심폐소생술 교육용 영아 마네킵 구매 500만원, 구민 헌혈 장려사업’ 헌혈장려지원 상품권 3,000만원임.
- 주요 증가 내역은 ‘아현문화건강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2,781만1천원, ‘아현보건지소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등 1,700만원, 대사증후군센터 검진시약 및 소모품 등 의료및회복비 713만원, ‘치아건강관리’ 서강, 아현 지소 의료인력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상분 114만4천원 및 서강보건지소

진료실 확장공사 500만원, 진료실 자산취득비 300만원 등 914만4천원,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89만원, 심폐소생술 교육용 영아 마네킵 구매 500만원 등 2,819만원, ‘구민 헌혈 장려 사업’ 헌혈장려지원 상품권 구입비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함.

- 주요 감소 내역은 ‘검사 및 검진사업’ 전년도 자산및물품취득비 책정 예산(진단용 x-선 발생장치, 생화학 자동 분석기 구입) 편성사유 소멸에 따른 △2억7,800만원, ‘인력운영비(어르신건강동행사업)’ 전년도 ‘지역사회중심재활 및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어르신건강동행사업으로 구분되면서 예산 구분으로 △7,792만7천원 감액 편성함.

4.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없음

5.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없음

6.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 없음

IV. 2024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

가. 기금구성현황

(단위: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e) = (d) + (a)	비 고
	수입 (b)	지출 (c)	증감 (d) = (b) - (c)		
2,635,129	142,330	620,595	△478,265	2,156,864	

나. 자금운용(수입·지출)계획

1)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수 입 합 계	2,777,459	2,767,048	10,411
세외수입	123,580	93,128	30,452
경상적세외수입	123,580	93,128	30,452
징수교부금수입	34,800	58,440	△23,640
이자수입	88,780	34,688	54,09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53,879	2,673,920	△20,041
보전수입등	2,653,879	2,673,920	△20,041
융자금원금수입	18,750	18,750	0
예치금회수	2,635,129	2,655,170	△20,041

2)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지 출 합 계	2,777,459	2,767,048	10,411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620,595	619,565	1,030
식품진흥활동(식품진흥기금)	620,595	619,565	1,030
식품진흥기금 운용	620,595	619,565	1,030
재무활동(위생과)	2,156,864	2,147,483	9,381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2,156,864	2,147,483	9,381
여유자금예치	2,156,864	2,147,483	9,381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기금으로서 재원은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등으로 조성되며,
- 주요 지출은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사업에 전년대비 103만원 증가한 6억1,956만5천원, ‘여유자금예치’로 전년도 대비 938만1천원 증가한 21억5,686만4천원을 편성함.

V. 검토결과

□ 검토의견

- 2024년도 마포구 예산안 편성방향
- 세입예산은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상황, 부동산 거래 정체 등 어려운 세입 여건이 예상되며, 특히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는 고금리, 세금감면 정책 및 공시가격변동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의 증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기침체 및 이월체납액 감소로 지난년도 보다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부동산 관련 과징금, 과태료, 개발 부담금의 부과 예정으로 전년대비 증가가 예상됨.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의 영향으로 구비 부담금이 증가됨.
- 세출예산은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이 적극 반영되었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예산이 증대되었음. 또한 중대재해 예방 및 생활안전 등 구민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 관

광 도시 조성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음. 아울러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음.

-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6억7,996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1억5,735만5천원 대비 3.23%, 5억2,260만6천원 증가하였음.
- 세입 증가 요인은 건강동행과 시·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체 국·시비보조금은 보건소 세입예산의 97.8% (163억 1,764만 5천원)로 전년대비 3.52% 증가하였음.
- 이를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 사업의 축소로 관련 국고보조금 규모가 전년대비 감액되었고, 반면 시도비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 문제를 정책화하여 추진하면서 모자보건 사업이 확대되어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 보건소 추진 사업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보건의료 정책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 되어 추진하고 있어 국·시비보조금 비율이 높음. 주로 건강동행과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국가적 움직임은 구민의 보건복지 욕구를 증가시키지만 사업들은 의존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자원 감소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향후에는 구민 수요와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의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그 밖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보건소 1층 건강나눔카페 임대료 수입으로 코로나 엔데믹으로 영업활동이 재개되어 세입이 발생하였음.

- 202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276억4,108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9억784만3천원 대비 2.73%, 7억3,324만2천원이 증액되었음.
- 보건행정과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에이즈예방관리’, ‘국가결핵관리사업’의 국·시비 매칭 비율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 하였고,
- 위생과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식품방사능 안전 관리(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고,
- 건강동행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이 대폭 감액(△14억5,632만6천원) 되었음에도 ‘난임부부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출산장려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의 확대에 증액되어 전체 예산이 증가됨.
- 의약과는 ‘아현문화건강센터 시설관리’, ‘아현보건지소 운영’,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구민 헌혈 장려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지만, 전년도 의학 장비(‘영상의학실 장비’, ‘생화학 자동 분석기’)구매 사업이 완료되어 전체예산은 감소됨.
- 부서별 주요사업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보건행정과】 ‘통합민원서비스’ 사업으로 의료지원 민간 용역비와 화장실 비데 임차 용역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4,003만원 증액 편성함. ‘정신보건사업’은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정신건강위기대응 사업, 고위험군 일반인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3,008만8천원 증액 편성하고,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함.
 - ‘통합민원서비스’ 사업은 구민 정신건강 복지차원의 사업 추진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나, 대부분 매칭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의 지속여부를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아울러, 상기 사업의 위탁체인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자살예방사업, 자살 유족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의 예산은 민간 위탁금으로 센터의 인력 및 운영비에 국한된 예산임. 주체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전반적인 센터의 운영 방향과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겠음.
- **【위생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3,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관리 가능한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시비 매칭사업으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4,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건강동행과】** ‘햇빛센터 운영’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현 보건소 2층을 ‘햇빛센터’로 설치하여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7월 개관 이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등 4,18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함.
-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 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및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매칭사업임.
- 2023년 7월 1일부터 기존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통합

하여 난임부부 지원 대상이 확대 적용되는 사항으로 전년대비 14억 4,38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함.

-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임.
- 위 사업은 2013년 5월 국정과제로 「고위험임산부 별도진료비 지원」 추진 확정됨³⁾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산 대책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매칭사업 가내시액 증가로 6,63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자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하고 있음.
- 위 사업은 2006년 4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산 대책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매칭사업 가내시액 증가로 2억1,27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함.
-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를 직접 찾아가는 1:1 모유수유 관리로 신속한 산모의 수유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전액 시비로 2,410만원 신규 편성함.
- ‘자체예방접종사업’은 취약계층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 취약계층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조례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 **【의약과】** ‘아현문화건강센터 시설관리’는 아현보건지소를 포함

3) 2015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하여, 초록숲작은도서관, 구립가람슬기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포종합재가센터 등의 운영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781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 ‘아현보건지소 운영’은 아현문화건강센터 2층에 위치한 아현보건지소의 운영 관련 예산으로, 대사증후군사업 및 지역주민 건강커뮤니티 사업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대사증후군센터 검진시약 및 소모품 구입 등 총 2,6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은 법률에 따른 교육의무대상자 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 관내 학생,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보수와 심폐소생술 교육용 영아 마네킹 구매 등으로 총 2,819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구민 헌혈 장려 사업’은 구민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자 상품권 지급을 위한 구매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체제였던 보건의료 정책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로 중지됐던 기본 업무의 운영 재개로 일부 사업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 보건소 예산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눈에 띄고,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 국·시비보조금 비율이 매우 높아서 의무적 구비 부담 역시 큰 편임. 지속적인 구비 부담은 구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과 주민편의를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 같은 상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으로 더욱 악화되어 국·시비 기준 보조율의 범위가 탄력적이지 않고 보조금 지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열악한 구 재정예 부담이 가중되므로 국가 및 서울시 사업과 공모 사업 등의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음.
- 따라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비율 인하는 물론, 타당성이 낮은 매칭 사업의 경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요구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다양한 보건사업이 구민 모두에게 전달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사업별 홍보물에 의지한 마케팅보다는 부서별 통합 홍보계획을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아울러, 신규 사업인 선별검사소 가설물 설치 사유의 타당성(5,000만원)과 임산부의 현실적 지원이 아닌 일회성 행사 운영비로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2,060만원) 비용의 타당성을 논의해야 하겠음.
-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 위생을 강화하고 구민의 식품영양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기금 수입계획은 과징금, 용자금회수이자수입, 용자금 원금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041만1천원 증액 편성함. 지출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위생시설 개선사업, 모범음식점 육성, 시설개선자금의 용자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비로 2,088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 식품위생감시 활동으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코로나 팬데믹 시설

위생물품지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과를 이루었으나, 융자금 대
여 사업은 시설개선자금 명목으로 운영되어 융자 진행된 사례가 없
었음.

- 예산과 별도로 조성되는 기금의 경우 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
장되며 재정통제가 엄격하지 않아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가
능성이 존재하며 일반회계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음. 특히 사업성기금은 민간이전경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집행된 경우 선심성 지출 여부, 융자성기금은
기금 용자에 대한 회수 여부 등 사후관리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박 철 호

4) 양지숙(20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의 위험요인 분석:기금 감사 및 성과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4).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참고자료]

□ 보건소 증액사업 편성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페이지	사업명	예산현황			비고
			2024년	2023년	증(Δ)감	
보건 행정과	635	통합민원서비스 - 선별검사소 가설물 설치비 (시설비)	50,000	9,970	40,030	
	637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예탁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32,000	560,000	△228,000	
	637	암조기검진사업 - 암검진비 건강보험공단 예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71,920	251,500	20,420	
	642	정신보건사업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864,000	833,912	30,088	
	645	방역소독 - 방역소독원 위생용품 630천원 - 방역소독원 피복비 700천원 - 신종위생해충 대량발생 등 위탁계약 12,000천원 - 새마을자율방역대 운영비 6,080천원 (사무관리비)	19,410	4,530	14,880	
	652	말라리아 퇴치사업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20,000	0	20,000	순증
위생과	660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금)	625,000	592,400	32,600	
	661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 - 수산물 수거 검사 (재료비)	30,000	0	30,000	순증
	661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기타보상금)	15,600	0	15,600	순증
건강 동행과	664	햇빛센터 운영(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564	0	22,564	순증
	667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2,212,455	768,570	1,443,885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명	예산현황			비고
			2024년	2023년	증(△)감	
	668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93,322	26,940	66,382	
	672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292,000	210,000	1,082,000	
	675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 - 모유수유매니저 서비스제공비용(기타보상금)	23,100	0	23,100	순증
	677	자체예방접종사업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71,300천원 - 대상포진 예방접종 291,830천원 -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16,420천원 - 의료소모품 2,000천원 (의료 및 회복비)	381,550	88,145	293,405	
의약과	723	아현문화건강센터 시설관리 - 아현문화건강센터 시설관리 위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99,341	471,530	27,811	
	724	아현보건지소 운영 - 강사비(대사증후군, 만성질환관리 등) 5,760천원 - 강사비(운동 및 영양교육프로그램 등) 46,400천원 (행사실비지원금)	52,160	35,160	17,000	
	730	치아건강관리 - 서강보건지소 진료실 확장공사 (시설비)	5,000	0	5,000	순증
	739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890	0	22,890	순증
	741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 심폐소생술 교육용 영아 마네킹 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	0	5,000	순증
	742	구민 헌혈 장려 사업 - 헌혈장려지원 상품권 (기타보상금)	30,000	0	30,000	순증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